

농업을 새롭게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	제188호
------	-------

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(추가)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22. 11. 14.

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(추가)

의 안 번호	제188호
----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11. 14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제안설명자 : 인구청년교육과장

1. 제안이유

- 2023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 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【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현황】

- 설 립 일 - 1998. 12. 28.
- 일반현황 - 임원현황 : 이사 12명, 감사 2명
- 기본재산 : 6,227,386천원
- 설립목적 - 인재육성을 위한 초·중·고·대학생에 대한 장학사업
- 면학시설 확충에 필요한 관내 초·중·고·대학교 지원사업

□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출연금

○ 추가 출연금(2023년 본예산) : 1,600,000천원

- 150억을 목표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대학생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양질의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논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논산시 장학회에 출연

○ 既(1차) 출연금(2023년 본예산) : 690,000천원

-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·양성하고 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출연

□ 출연계획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3년			비 고
	계	既동의	추 가	
	2,290,000	690,000	1,600,000	
출연금 (시비100%)	2,000,000	400,000	1,600,000	
출연금 (협력사업비)	290,000	290,000	-	

※ 논산시 출자·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(출연금 증액 타당성 심의, 2022.11.1.)

□ 장학기금 조성계획(안)

(단위: 백만원)

연도별	자산합계	수 입					지 출 장학금 운영비	비 고
		출연금		기부금	예금이자	계		
		시	시금고					
2022. 10	7,130	400	290	10	55	755	-256	
2022. 12	6,358				20	20	-792	*
2023	8,393	2,000	290	500	95	2,885	-850	**
2024	10,459	2,000	290	500	126	2,916	-850	
2025	12,556	2,000	290	500	157	2,947	-850	
2026	14,685	2,000	290	500	188	2,978	-850	

* 글로벌인재장학금 지급, ** 운영비·장학금 지급(8.5억)

□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「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」
- 「지방재정법」

참 고

관 련 법 규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「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7조(출연금) 논산시는 장학회의 장학재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